

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리현황

2007. 3. 29

식품의약품안전청
용기포장팀장

목 차

1.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규정
2.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관리 현황
3. 향후 안전관리 방향

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규정

정의

식품위생법 제2조 4항 및 5항

✓ 기구

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, 제조, 가공, 조리, 저장, 운반, 진열,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,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·기구 기타의 물건

✓ 용기·포장

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,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

유독기구등의 판매 사용금지

식품위생법 제8조

유독·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·포장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·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, 수입, 저장, 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함

영업의 종류

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[영업의 종류]

✓ 용기·포장류 제조업

- 용기·포장지 제조업 :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·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
- 용 기 류 제 조 업 : 식품을 제조·가공·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아리등을 제조하는 영업

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6호 [영업신고]

- 관할 해당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영업신고

수입 신고

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

- ✓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통관장소 관할)
- ✓ 국립검역소장(서울, 부산, 인천, 김해검역소장 제외)

자가품질검사의 의무

식품위생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

- ✓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는
재질별로 기준규격 적합여부검사 실시
- ✓ 동일 재질별로 3월마다 1회 이상 실시
- ✓ 자가품질검사기록서를 2년간 보관

기준과 규격

식품위생법 제9조

- ✓ 1항 - 기구 및 용기·포장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
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고시

식품위생법 제12조

- ✓ 식품등의 공전 -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규격을
수록한 공전을 작성 보급



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관리 현황

일반기준

- ✓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또는 수리에 땀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
- ✓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
- ✓ 동제 또는 동합금제는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을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
- ✓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

- ✓ 인쇄잉크를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, 내용물을 투입시 형태가 달라지는 합성수지 포장재는 톨루엔이 $2\text{mg}/\text{m}^2$ 이하이어야 한다. 또한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지 않아야 한다
 - ✓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에는 DEHP(일명 DOP)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
 - ✓ 랩 제조시에는 DEHA(일명 DOA)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
 - ✓ 젓병(젓꼭지 포함) 제조시에는 DBP, BB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
- [고시에정]

재질별 규격

- ✓ 합성수지제 (총 41)
- ✓ 셀로판 : 재생셀룰로오스필름제
- ✓ 고무제
- ✓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
- ✓ 금속제
- ✓ 금속관
- ✓ 목재류
- ✓ 유리, 도자기, 법랑 및 용기류
- ✓ 전분제

합성수지제

재질명	
1	Polyvinylchloride(PVC)
2	Polyethylene(PE), Polypropylene(PP)
3	Polystyrene(PS)
4	Polychlorovinylidene(PVDC)
5	Polyethyleneterephthalate(PET)
6	Phenolformaldehyde(PF)
7	Melamineformaldehyde(MF)
8	Ureaformaldehyde(UF)
9	Polyacetal(POM)
10	Acryl

재질명	
11	Nylon(PA)
12	Polymethylpentene(PMP)
13	Polycarbonate(PC)
14	Polyvinylalcohol(PVA)
15	Polyurethane(PU)
16	Polybutene-1(PB-1)
17	Butadien resins(BDR)
18	(ABS) (AS)
19	Polymethacrylstyrene(MS)
20	Polybutyleneterephthalate(PBT)

합성수지제

	재질명
21	Polyarylsulfon(PASF)
22	polyarylate(PAR)
23	Hydroxybutylpolyester(HBP)
24	Polyacrylonitrile(PAN)
25	Fluoro resins(FR)
26	Polyphenyleneether(PPE)
27	Ionomer
28	Ethylenevinylacetate(EVA)
29	Methylmethacrylate-acrylonitrile-butadiene-styrene(MABS)
30	Polyethylenenaphthalate(PEN)
31	Silicone

	재질명
32	Epoxy
33	polyetherimide
34	Polyphenylensulfide(PPS)
35	polyethersulfone(PES)
36	Polycyclohexane-1,4-dimethylterphthalate(PCT)
37	Ethylenevinylalcohol(EVOH)
38	Polyimide(PI)
39	Polyetheretherketon(PEEK)
40	Polylactide(PLA)
41	Polylbutylenesuccinate-co-adipate (PBSA)

(예)재질별 규격

멜라민수지 (Melamineformaldehyde : MF)

- ✓ 재질규격 (mg/kg)

- (1) 납 및 카드뮴 : 각각 100이하

- ✓ 용출규격 (mg/l)

- (1) 중금속 : 1.0 이하 (납으로서)

- (2) 증발잔류물 : 30 이하

- (3) 포름알데히드 : 4.0 이하

- (4) 페놀 : 30 이하

- (5) 멜라민 : 30 이하

주요 관리대상 유해물질

중금속

- ✓ 납
- ✓ 카드뮴
- ✓ 안티몬
- ✓ 비소

원료물질

- ✓ 염화비닐단량체
- ✓ 스티렌
- ✓ 페놀
- ✓ 포름알데히드
- ✓ 멜라민
- ✓ 메틸메타크릴레이트
- ✓ 카프로락탐
- ✓ 비스페놀A
- ✓ 이소시아네이트
- ✓ 아크릴로니트릴
- ✓ BADGE, BFDGE

기타

- ✓ 톨루엔
- ✓ DOP
- ✓ PCBs
- ✓ 형광증백제

향후 안전관리 방향

향후 추진방안

- ✓ 지속적인 제외국 정보 수집 및 분석
- ✓ 용기포장 중 위해물질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체계 구축
- ✓ 용기포장 기준규격의 과학화 국제화
- ✓ 용기포장 분석법의 효율적 개정
- ✓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